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로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수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첨 부】 1. 제정안 주요 내용 1부

2. 친일재산환수 관련 주요 소송 내용 1부

법무부	법무실 국가소송과	책임자	송무심의관	강선주 (02-2110-4382)
			과 장	국 진 (02-2110-3202)
			검 사	김다락 (02-2110-4386)
		담당자	사무관	이선민 (02-2110-3211)

첨부 1

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법	제정안
①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 환수 (법 제3조 제2항)	<신 설>	친일재산이 매각되어 그 자체를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 대가 환수
② 위원회 구성 (법 제6조)	위원 9인(위원장 1인·상임위원 2인 포함) ▷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	
③ 위원회 활동기간 (법 제9조)	4년 1회 한정 2년 연장 가능 (대통령 승인 필요)	3년 1회 한정 2년 연장 가능 (국회 동의 필요)
④ 포상금 지급 (법 제27조)	<신 설>	친일재산 적발·신고 또는 친일재산의 조사·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시행 전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준비행위 가능	

첨부 2

진행 중인 친일재산환수소송 현황

친일 행위자	소제기일	대상토지	소가	진행상황
이해승	'25. 10. 10.	의정부시 호원동 31필지	약 78억	1심 계속 중
신우선	'26. 1. 14.	고양시 일산동구 12필지	약 25억	1심 계속 중
임선준	'26. 1. 14.	여주시 천송동 8필지	약 5,300만원	1심 판결선고 (국가 전부승소)
박희양	'26. 1. 14.	구리시 인창동 2필지	약 30억	1심 계속 중

※ 법무부는 제1기 위원회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친일재산에 대해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제보와 민원을 받아 개별적 검토를 거친 후 국가귀속절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및 자료 확보 권한의 한계 등으로 소제기를 유보하였음